

제주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제주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 **상품특징** : 이 상품은 실명의 개인인 군 의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현역병사와 동일한 봉급체계를 적용 받고 있는 자 중 희망자에 한해 가입하도록 하여 사회 진출 시 자산형성(목돈 마련)을 위한 적립식 맞춤 상품

2 거래조건

-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지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함. (1인 1계좌) 1.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2.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원본 제출자 (단, 비대면 신규 시[25.1.23.이후 가입 가능]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로 제출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도 가능)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 :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본인의 분산 식별자(DID : Decentralized Identifiers)와 디지털증명서(VC : Verifiable Credentials)를 통해 자격 검증)
계약기간	이 적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 ~ 24개월 이내로 일단위로 하며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또는 소집해제)예정일로 합니다. 이 적금의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없음.
상품유형	정기적금(자유적립식)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비대면채널 [25.1.23.이후 가입 가능] - 해지 : 영업점, 비대면채널 [25.1.23.이후 가입 가능] (자동해지 서비스 불가, 일부해지 불가)
최저거래금액	회차별 최소 1만원 이상



최고거래금액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30만원 이하
 단, 「장병내일준비적금」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55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 30만원까지 저축가능
 (단, 고객이 직접 설정한 금액 이내에서만 저축가능)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원금과
 해지 시점까지의 이자를 지급

**기본이자율
(세전, 연%)**

(2025.11.25.현재)

계약기간	기본이자율
1개월이상 ~ 6개월미만	3.5%
6개월이상 ~ 12개월 미만	4.0%
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4.5%
15개월 이상 ~ 24개월 이내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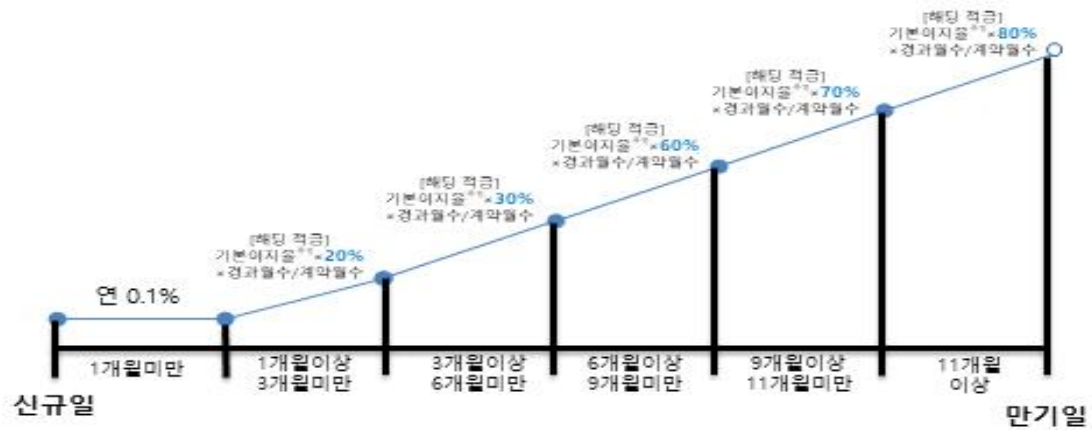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로 적용합니다.

(연%, 세전)

1개월 미만	1개월이상 3개월미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9개월미만	9개월이상 11개월미만	11개월이상
0.1%	[해당 적금] 기본이자율 ^{주1} × 2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해당 적금] 기본이자율 ^{주1} × 3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해당 적금] 기본이자율 ^{주1} × 6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해당 적금] 기본이자율 ^{주1} × 7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해당 적금] 기본이자율 ^{주1} × 8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주1)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제주은행 장병 내일 준비적금기본이자율

중도해지이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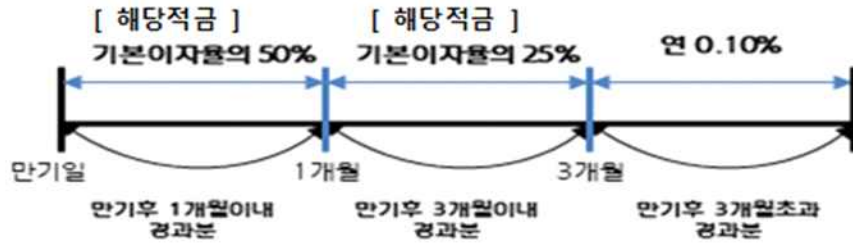


(연%, 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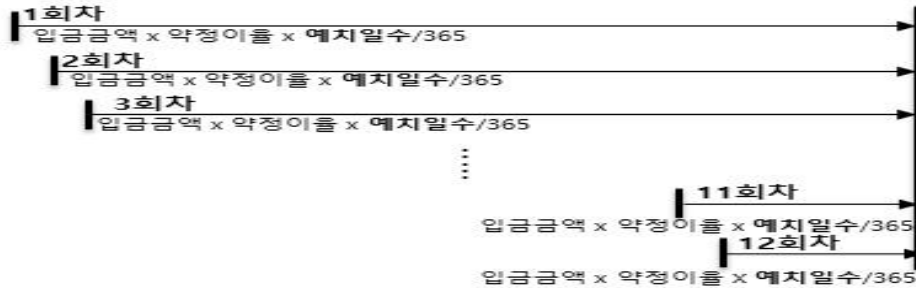
**만기후이자율
(산출근거)**

만기일 이후 1개월 이내 경과분	[해당적금] 기본이자율 ^{주1} 의 50% (단, 최저금리 0.1%)
만기일 이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해당적금] 기본이자율 ^{주1} 의 25% (단, 최저금리 0.1%)
만기일 이후 3개월 초과 경과분	0.10

주)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해당적금의 기본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12개월 기준)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자동이체

- 월 적립한도 이내에서 월별 자동이체 등록 가능
 - ※ 자동이체등록은 당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신청 가능

계약해지 방법

-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 비대면채널에서 가입한 상품인 경우 비대면으로 해지 가능

계약갱신 방법


해당사항 없음.

휴면예금 및 출연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세율의 적용 (세제혜택)

- 이 예금은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1.1.1 시행)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계좌에 한하여, 계좌의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된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추가 납입이 불가합니다.
- 비과세 혜택은 만기계좌에만 제공하며, 적금 신규일부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하지 않음)
 -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이 예금 만기일이 불일치한 전역자인 경우에도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 해지시에만 만기해지 적용됨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 예금주 사망에 의한 상속해지시에는 비과세 적용하지 않음

양도 및 담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적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 양도가 불가합니다. - 이 적금은 일부 해지 및 계약기간 변경은 불가하나, 질권설정은 가능합니다. 	
연계·제휴서비스	해당사항없음	
위법계약 해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 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 (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적금을 '25.01.01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하여 비과세저축 한도를 1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25.01.01 이전의 비과세저축 한도 변경이력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025년 1월 2일 이후(1월 2일 포함) 가입한 신규계좌는 비과세저축 한도변경이 불가합니다. - 이 적금의 비과세저축 한도는 5만원 단위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단, 이 적금을 '25.01.01까지 가입한 계좌는 기존에 설정한 비과세저축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장발행	이 예금 가입시 통장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무통장 거래도 가능)	
예금자보호여부 	해 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3 1% 이자지원금

☞ 병역법 개정으로 '21.10.14 기준 만기해지계좌부터 지급하며, '23.12.31까지 입금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 단,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 전용 상품으로,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적용이 불가능한 가입자의 경우는 1% 이자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1% 이자지원금 지급 관련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544(6545)) 및 병무청(☎042-481-3043, 사회복무요원에 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1% 이자지원금' 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 1% 이자지원금은 적금을 해지하는 경우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적금 예금주로서 아래 ①, ②, ③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만기계좌 ②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하는 고객 ※ 법에 의해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변경될 경우는 예외로 적용합니다. ③ 계좌 해지할 때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주)}원본 제출 (단,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이 변경된 경우, 역종변경 사실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제출 가능) ※ 주)'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무중인(전역전), 또는 복무하였던(전역후)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복무구분</td> <td>현역병, 상근예비역</td> <td>의무경찰</td> <td>해양의무 경찰</td> <td>의무소방원</td> <td>대체복무 요원</td> <td>사회복무 요원</td> </tr> <tr> <td>발급처</td> <td colspan="5">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td> <td>사회복무포털</td> </tr> </table>	복무구분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 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 요원	사회복무 요원	발급처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사회복무포털
복무구분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 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 요원	사회복무 요원									
발급처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사회복무포털									
지급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금 신규일부부터 만기일까지 입금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p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실제 예치일수 : 입금일부부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임. ※ 입금금액 건 별로 원미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셋째 자리에서부터 버림) 후 합산하여 원미만 절사 														
알아두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해지 계좌는 1%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적금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하지 않는 고객은 1% 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법에 의해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앞당겨진 고객은 제외 -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확인서 중 하나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만기 해지하는 경우 1%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 이자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님께서서는 만기해지 시 반드시 전역 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중 택1) 원본을 영업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기 해지시에 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1% 이자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이자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021년 10월14일이며, 시행일 이후 만기 도래하여 만기해지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1% 이자지원금'은 국가(국방부, 병무청)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 국가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매칭지원금

- ☞ 병역법 개정으로 지급 시행일은 '22.1.1이며, 시행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 ※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 및 1% 이자지원금과 달리, 만기해지시 은행에 제출한 입금 희망 계좌로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급관련 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02-3146-6544(6545)) 및 병무청(☎042-481-3043, 사회복지무요원에 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매칭지원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지지원금입니다. ※ 매칭지원금은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급대상	- 이 적금 예금주로서 '1% 이자지원금' 조건과 동일합니다. ※ 단, 지급방법은 '1% 이자지원금' 과는 달리 만기해지 후 복무구분에 따라 국방부(사회복무요원 외 대상자) 및 병무청(사회복무요원)에서 순차적으로 지급처리 합니다.
지급금액	- 적금 '납입건 별 금액'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에 관련 법령(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율)에서 정한 정부지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적금납입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24.01.01이후 납입액부터적용) ※ '22.01.01~'22.12.31 납입액: 적금납입원금 + 은행이자 소득 + 1%이자지원금 합산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 ※ '23.01.01~'23.12.31 납입액: 적금납입원금 + 은행이자 소득 + 1%이자지원금 합산금액의 71%에 해당하는 금액
알아두실 사항	- 매칭지원금은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자금으로, 국가 정책 및 법률등의 변경 및 개정 내용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금액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적금가입, 추가납입, 정부지원금(1%이자지원금, 매칭지원금)지급 및 비과세 적용 모두 불가 합니다. - 매칭지원금의 지급은 만기해지 후 복무구분에 따라 국방부 또는 병무청에서 순차적으로 지급처리 합니다. - 확인서 미제출로 매칭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 할 수 없습니다.



5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 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적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 양도가 불가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및 재정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만 해당 계약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 이 적금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신규일 기준으로 고객의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예금 신규가 불가합니다.
- 이 적금은 '제주은행'과 '국방부(병무청)'간 업무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적금을 한번이라도 만기 해지한 고객은 재 가입이 불가합니다.
-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이 불일치한 정상 전역자의 경우 반드시 적금 만기일 이후에 해지 해야만 만기해지가 적용되며, 적금 만기일 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적용됩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운용 형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금리가 변동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수익이 증가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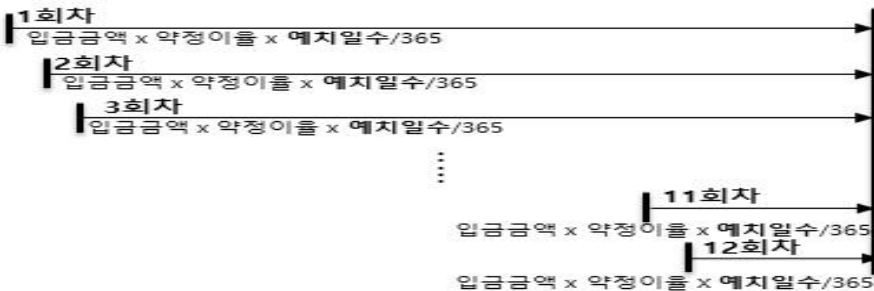
용 어	설 명
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제주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요약 상품설명서

< 기본정보 >

기본이자율	연 5.0%	- 15개월 이상 ~ 24개월 이내 가입 시.	
가입기간	1개월 ~ 24개월	예금주 전역일자와 만기일자 동일하게 적용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가입제한)	
최저가입금액	1만원	최고가입금액	월 30만원 (단, 고객이 직접 설정한 금액 이내 까지만 저축가능)
1%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단, 1% 이차지원금은 2023년12월31일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만 적용) ※ '22년도 납입액: 적금납입원금 + 은행이자 소득 + 1%이자지원금 합산금액의 33%에 해당하는금액 ※ '23년도 납입액: 적금납입원금 + 은행이자 소득 + 1%이자지원금 합산금액의 71%에 해당하는 금액 ※ 만기해지시 전역일기 명기된 확인서 원본 제출 필수 ①전역증 ②병역증 ③병적증명서 ④복무사실확인서(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만 가능) 中 택1		
재예치	×		
일부해지	×		
예금담보대출	○	납입액의 95%까지 가능	
예금자보호	○	원금과 이자 포함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가능	
이용제한사항	- 이 적금을 '25.01.01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하여 비과세저축 한도를 1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25.01.01 이전의 비과세저축 한도 변경이력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025년 1월 2일 이후(1월 2일 포함) 가입한 신규계좌는 비과세저축 한도변경이 불가합니다. - 이 적금의 비과세저축 한도는 5만원 단위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단, 이 적금을 '25.01.01까지 가입한 계좌는 기존에 설정한 비과세저축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문점은 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이율	최저 연 0.1% ※ 중도해지는 영업점 방문 필요
이자계산방식	저축금마다 약정이율로 계산(12개월 기준)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